

[별지 제1호] <개정 2016. 12. 6.>

임원 선임 보고

문서번호 20-06-04

2020. 06. 04.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담당 부서장)

제 목 임원 선임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코펜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붙 임 : 1. 임원 선임 내용 1부
2. 임원 선임 심사표 각 1부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내역 각 1부. 끝.

코펜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재충



작 성 자 : 조정제(이사)

전화번호 : 02-2135-3271

(붙임 1)

임원 선임 내용

1. 선임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 (만료일)	업무 범위	주요경력 ¹⁾	겸직사항 ²⁾	자격요건 확인결과 ³⁾
이사	송재용 (宋宰用)	560919	20.05.07	3년 (23.05.06)	각자 대표 이사	한국산업은행 KDB인프라자산 운용 서희건설 참빛그룹 은민E&C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이사	박종홍 (朴鐘洪)	801013	20.05.07	3년 (23.05.07)	등기 이사	유니셈 대신증권 KTB투자증권 원브릿지캐피탈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 기재, 현직여부 표시)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3) 법 제5조 및 제6조의 임원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해당유무를 확인한 결과 기재

2. 임원현황(변동후)

직 위 (상임 및 등기 여부)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최초선임일, 선임횟수)	임기 만료일	주요경력 ¹⁾	겸직사항 ²⁾	비 고
대표이사 (상임, 등기)	박재충 (朴在忠)	670112	18.03.23 (최초선임)	21.03.22 (3년)	교보증권, 메리츠증권증권, 대우증권	해당사항 없음	
이사 (상임, 등기)	조정제 (趙廷濟)	700302	19.08.01 (최초선임)	22.07.31 (3년)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 역임 기업구조조정전문회 사(CRC)근무	해당사항 없음	
이사 (상임, 등기)	송재용 (宋宰用)	560919	20.05.07	23.05.06 (3년)	한국산업은행 KDB인프라자산운용 서희건설 참빛그룹 은민E&C	해당사항 없음	
이사 (상임, 등기)	박종홍 (朴鐘洪)	801013	20.05.07	23.05.06 (3년)	유니셈 대신증권 KTB투자증권 원브릿지캐피탈	해당사항 없음	
감사 (비상임, 등기)	황윤규 (黃允圭)	830211	20.01.28 (최초선임)	23.01.27 (3년)	법무법인다담 변호사	법무법인 다담 변호사	


주 1) 최근 5년간 경력을 기재(임원자격요건 해당경력을 기재)

2) 다른 회사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명(자회사등 여부) 및 업종, 겸직하고 있는 업무 및 직위, 겸직기간 등 기재

임원 선임 심사표

성 명	송재용	직 위	상근 등기 이사(각자대표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공통사항></p> <p>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하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p> <p>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p> <p>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p> <p>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p> <p>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p>		<p>해당 사항 없음</p> <p>해당 사항 없음</p> <p>해당 사항 없음</p> <p>해당 사항 없음</p> <p>해당 사항 없음</p> <p>해당 사항 없음</p> <p>해당 사항 없음</p> <p>해당 사항 없음</p> <p>해당 사항 없음</p>	<p></p>


성 명	송재용	직 위	상근 등기 이사(각자대표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p>		해당 사항 없음	
<p>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p>		해당 사항 없음	
<p>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해당 사항 없음	
<p>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p> <p>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p> <p>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부터 3년</p>		해당 사항 없음	
<p>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부터 5년</p> <p>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부터 4년</p> <p>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부터 3년</p>		해당 사항 없음	
<p>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p>		해당 사항 없음	
<p>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p>		해당 사항 없음	

성 명	송재용	직 위	상근 등기 이사(각자대표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p>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해당 사항 없음</p> <p>해당 사항 없음</p> <p>해당 사항 없음</p> <p>해당 사항 없음</p>	
<p><u>종합 의견</u> : 상기 송재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 제1항의 임원(대표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코펜자산운용(주) 사내이사(각자대표이사)로 선임 함에 결격 사유가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05월 07일</p> <p style="text-align: center;">코펜자산운용(주) 대표이사 박재충 (인)</p> 			

임원 선임 심사표

성 명	박종홍	직 위	상근등기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공통사항>				
I.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하 “법”) 제5조제1항 관련사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 사항 없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 사항 없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 사항 없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당 사항 없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 사항 없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당 사항 없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해당 사항 없음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해당 사항 없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해당 사항 없음			

성 명	박종홍	직 위	상근등기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p>		해당 사항 없음		
<p>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p>		해당 사항 없음		
<p>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해당 사항 없음		
<p>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p> <p>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p> <p>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p>		해당 사항 없음		
<p>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p> <p>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p> <p>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p>		해당 사항 없음		
<p>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p>		해당 사항 없음		
<p>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p>		해당 사항 없음		

성 명	박종홍	직 위	상근등기이사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p>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해당 사항 없음</p> <p>해당 사항 없음</p> <p>해당 사항 없음</p> <p>해당 사항 없음</p>		
<p><u>종합 의견</u> : 상기 박종홍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 제1항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코펜자산운용(주) 상근등기이사로 선임 함에 결격 사유가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05월 07일</p> <p style="text-align: center;">코펜자산운용(주) 대표이사 박재충 (인)</p> 				

(붙임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내역

(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함)

1. 일 시 : 2020년 05월 04일
2. 장 소 : 서울 강남구 삼성로 434, 9층(대치동, 주비스타워)
코펜자산운용(주) 소회의실
3. 위원 현황
 - 위원수 : 총 3명
 - 위원장 : 대표이사 박 재충
4. 참석자(위원 이외의 배석자 포함) :
위원: 대표이사 박재충, 사내이사 조정제, 감사 황윤규
5. 불참자 : 없음
6. 후보자 선정방식 : 이사회 추천 및 주주총회 승인

※ 첨부서류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1부.

코펜자산운용 주식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박재충(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록

코펜자산운용 주식회사

위 회사는 2020년 05월 04일 09시 소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다.

참석 위원 : 대표이사 박재충, 사내이사 조정제, 감사 황윤규

2020년 5월7일자로 사내이사 최현자, 사내이사 오한영이 각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임원 사임을 승인하고 신규 임원 선임의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은 바, 송재용(1956년 9월 19일생)을 사내이사(각자대표)로, 박종홍(1980년 10월 13일생)을 사내이사(상근등기) 하자는 추천이 있고 위원 전원이 이에 찬성함에 따라 송재용을 사내이사(각자대표)로 박종홍을 사내이사(상근등기)로 선임하는 안건으로 2020년 05월07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위원장은 이상으로서 안건 전부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회의 종료 시간 : 09시 25분)

2020년 05월 04일

코펜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로 434, 9층(대치동, 주비스타워)

대표이사 박 재 충

